

● 제33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6. 20.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 안 자 : 이숙자 의원(26명 찬성)
- 나. 제 안 일 : 2025. 5. 26.
- 다. 회 부 일 : 2025. 5. 29.
- 라. 의안번호 : 278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회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운영중임.
-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매년 약 1.3%씩 증가하는 특허출원 등에 맞춰 지식재산권 창출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등 기술적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현행 법률 전문가 중심의 입법·법률고문만으로는 기술과 법률이 융합된 쟁점에 대한 자문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입법·법률고문의 다양성 및 기술 분야의 검토 역량을 강화하고자 변리사를 포함하여 운영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입법·법률고문 위촉 대상에 대한변리사회에 등록된 변리사를 포함
(안 제4조제1항제2호 신설)
-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비용의 처리 규정을 「서울특별시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안 제10조 개정)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해당 없음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로 같음

(3)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6. 3.(화) ~ 2025. 6. 7.(토) (5일간)

나) 예고결과 : 없음

2) 소관부서 의견조회

- 다른 전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입법·법률고문 위촉 대상이 아닌 별도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최현재)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회에서 운영중인 입법·법률고문에 기술 분야 자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변리사를 포함하여, 기술과 법률이 융합된 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발의된 것임.

2 위촉 대상 추가(안 제4조제1항제2호)

- 본 조례안 제4조제1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위촉 대상에 대한 변리사협회에 등록된 변리사를 신설하고 기존 제2호 및 제3호를 순차적으로 정비한 것임.

<개정안 제4조제1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 <신 설> 2. 서울 소재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 3. 입법·법률 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제4조(위촉) ① ----- -----. 1. (현행과 같음) 2. 대한변리사회에 등록한 변리사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 입법·법률고문은 입법업무와 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 ▲ 서울 소재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 ▲ 입법·법률 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함.¹⁾

- 개정안은 위촉 대상에 대한변리사회에 등록된 변리사를²⁾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변리사의 업무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을 수행하는 것임.³⁾
- 서울시의 지식재산권⁴⁾ 점유율은 35.1%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매년 1.3%씩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등 중요성이 높아짐에⁵⁾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 '23년 서울시 지식재산권 국내출원 현황 >

(단위: 건)

구 분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합 계	점유율
서 울	54,023	504	15,772	94,758	165,057	35.1%
경 기	61,623	860	15,770	59,670	137,923	29.3%
대 전	11,594	46	1,217	5,158	18,015	3.8%
전 국	191,142	2,400	49,936	227,238	470,716	100%

1)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위촉)

2) 「변리사법」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23.1.3.>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23.1.3.>

4) 지식재산권의 분류(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 2페이지) 참조

단계	내용	예시
산업재산권	산업영역에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新지식재산권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	데이터, 전통지식, 유전자원

5) 특허청 지식재산 통계 연보<2024>

(단위 : 건)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특허출원	47,737	48,969	48,030	47,288	45,482	47,123	52,270	53,124	54,042	53,871	54,023

- 이에 따라, 서울시 입법기관으로 정책과 사무를 감사하며 정책 의회를 지향하는 서울시의회도 지식재산과 관련된 역량을 갖추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입법·법률고문 위촉 대상에 변리사를 추가하여 자문단 구성을 다변화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사료됨.

3 관련 규정 정비(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소송수임료와 관련하여, 2024년 1월 18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법제담당관에서 반영하지 않아 금번에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개정안 제10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소송수임료 등) 입법·법률고문 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은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소송수임료 등) ----- ----- -- 「서울특별시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4 종합검토

- 본 조례안은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서울시에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등 법률과 기술이 융합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발의된 것임.
-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법률 전문가 외에도 일정 경력을 갖춘 비법조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24명의 입법·법률고문 중 23명이 법조인임.⁶⁾

6) 입법·법률고문: 법조인 23명, 입법 관료 1명(위촉기간: '23.5.23.~'27.5.22.)

- 따라서, 본 개정안을 통해 위촉 대상에 변리사를 추가함으로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식재산 관련 전문성을 강화한다면
서울시의회 입법 지원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향후 서울시의회는 행정 및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당 전문 분야의
입법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입법·법률고문을 운영하여 시의적절한 입법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임.

담당 연락처

02-2180-7691